

- 2023년 인천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-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안내(의료기관용)

I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3. 7. ~ 사업 종료 시

· (유의사항) 2023년 7. 1.이후 시술(지원 결정 통지서)에 한하여 지원
단,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'지원결정통지서'를 교부받은
경우에 한하여 지원

○ 사업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자
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
· (유의사항)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
※ 거주 및 거주기간 기준 : 난임여성

○ 지원범위 및 내용

- 지원범위 :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 지원
- 지원시술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- 지원최대금액
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		만 44세 이하	만 45세 이상
체외수정	신선배아(1~9회)	최대 110만원	최대 90만원
	동결배아(1~7회)	최대 50만원	최대 40만원
인공수정(1~5회)		최대 30만원	최대 20만원

· (유의사항)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,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,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차감)에만 지원가능

○ 시술 의료기관 :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·인공수정 의료기관

- 시술비 청구 : 기존 국가 지원 방법 및 서식과 동일

· (유의사항)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불가
(단,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'지원결정통지서'를
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 인정)

○ 신청 및 지원절차

- 제출서류 : 국가지원 서류와 동일
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)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
· **(유의사항)** 사실상 혼인관계로 제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, 방문 신청 필요 (온라인 신청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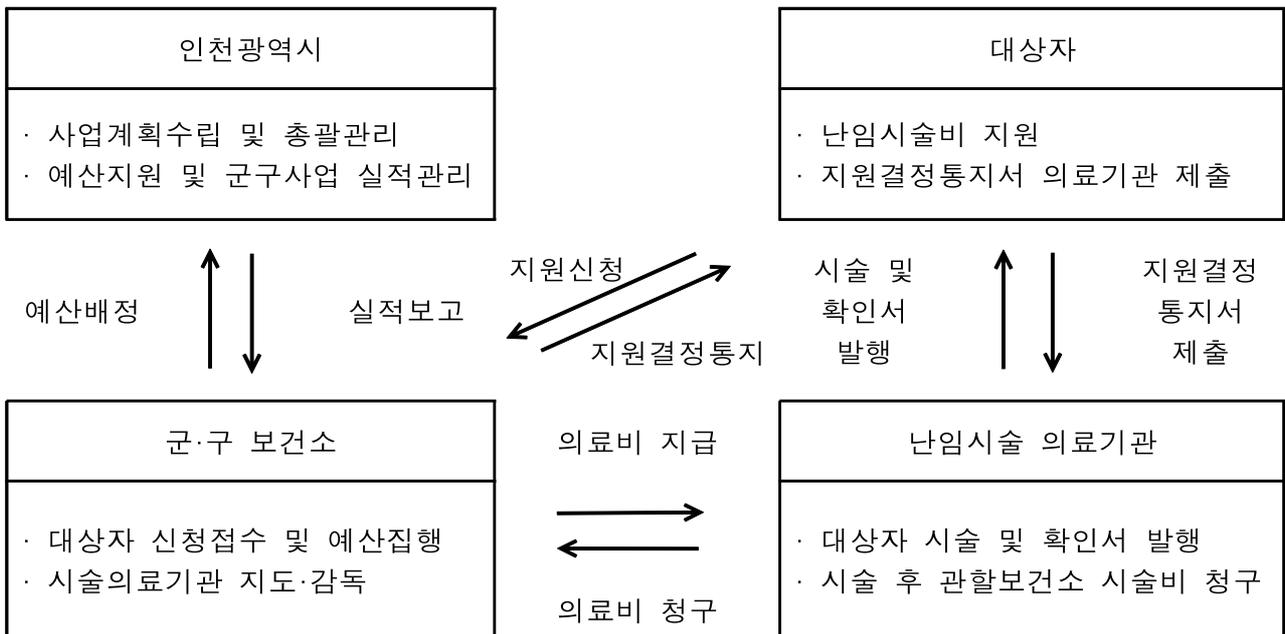
※ 단,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(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)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
- 지원절차



- 난임부부 시술비 시술통지서 일련번호 ICN으로 기존 사업과 구분하여 지급

○ 사업 추진체계



【2023년 국가 및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비교표】

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	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자(사실혼 포함)	사업대상	좌동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	소득기준	기준중위소득 180%초과
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(주민등록) 난임부부	거주기준 ※ 거주 및 거주기간 기준 : 난임여성	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이상 거주(주민등록) 난임부부
·신선배아 최대 9회 ·동결배아 최대 7회 ·인공수정 최대 5회	지원횟수	좌동
보건복지부 지정 체외·인공수정 의료기관	시술 의료기관	좌동
·신선배아 90~110만원 ·동결배아 40~50만원 ·인공수정 20~30만원	1회당 지원금 상한액	좌동
·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·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	신청방법 및 서류	좌동
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한 비용건 청구 등	시술비 지급	좌동
20 - 호	지원결정통지서 일련번호	ICN-20 - 호

※ 소득기준, 거주기준, 일련번호 외 국가난임사업 기준 준용